

성명서
(2019. 10. 1.)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문 의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9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해당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여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명백히 ‘성착취, 성학대’ 피해자이다. 부처 간의 이견 등을 핑계로 더 이상 위 아동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위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성명서

담당자	[redacted] 외국변호사			
작성일	2019. 10. 2. (수)	작성처	두루 (02-6200-1914)	총 2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에도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성매매라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점점 많은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성매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약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사기관 단속 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보호처분 역시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수자 또는 알선자는 이를 협박, 이용하여 신고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 하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주저하며 오히려 성매수자 또는 알선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고, 따라서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모든 아동은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함과 함께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34조). 한편, 협약의 채택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계속되고 피해 아동의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유엔은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규제

에 관한 선택의정서」(이하 "제2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된 모든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명시하고(제2조),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제9조). 또한 국제사회는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이나 운반 등을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아동의 성매매는 위협이나 무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아동의 성매매는 아동의 착취에 해당하는 학대 및 폭력행위이자 인신매매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협약을 비준한 많은 국가는 아동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것을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 온 것이다.

2015년 8월 7일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 발의)은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모든 아동은 양육되는 동안 어떠한 형태든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피해 아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2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부여한 아동보호 의무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제2소위에 넘어간 뒤에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입법 반대 의견으로 인해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성착취 피해아동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자문·상담, 입법운동, 연구, 교육, 국제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이기도 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걸음 내딛기 위하여 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끝)

2019. 10. 2.
사단법인 두루

성명서

담당자	[redacted] 변호사			
작성일	2019. 10. 4. (금)	작성처	국제아동인권센터	총 2장

대한민국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당사국의 책무를 이행하라.

2019년 10월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구금과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착취 신고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며,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i) 대상아동·청소년을 법률상 “피해자”로 지칭할 것, (ii)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 (iii)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 (iv)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 구체적인 권고내용으로 제시되었다(CRC/C/KOR/5CO/5-6, paras. 28-29). 과연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제시된 이번 권고사항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성매매, 성학대를 포함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피해구제 및 회복을 지원받을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아동의 권리이다. 이러한 범죄는 상황 자체만으로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국가는 성매매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조, 제19조, 제34조, 제36조,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본심의 현장에서 “(성매매) 재범 방지 등 목적을 위하여 시행 중인 보호처분제도 폐지의 적정성, 폐지 시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성매수범죄의 책임을 아동에게 묻는 법무부의 입장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더욱이 법무부는 협의를 위한 대안으로 “일정 연령까지만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성매수범죄 피해아동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의 시각은 다시 한번 아동권리 관점의 부재를 드러낸다. 아동은 성인에 이르는 지속적

인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하는 아동의 정의는 그 온전한 발달을 조력하고, 지지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즉, 연령과 상황에 따라 아동의 권리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성매매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이며, 그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받아야 한다. 성매매를 한 아동(Child prostitute)이 아니라, 성매매 상황에서 착취당한 아동(Children exploited in prostitution)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발의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체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당신들의 책무를 외면할 것인가. 유엔아동 권리협약 이행 심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심의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각 관계자들이 그 현장을 지켜보았다. 정부의 다짐이 공허한 외침에 끝나지 않도록, 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끝)

2019. 10. 4.



성 명 서

담 당 자	[redacted] 변호사			
작 성 일	2019. 10. 7. (월)	작 성 처	장애인권법센터	총 2장

국회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카카오톡보다 많이 다운되는 채팅앱은 '익명' 채팅앱이다. 200여개가 넘는 익명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려는 성인들이 집요하게 말을 걸어오는 현실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점점 많은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

알선, 유인 없이 자발적으로 댓가를 받고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의자로 수사받고 소년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소년재판을 받으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집단생활을 하여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과정이 '교화'목적상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와 방임을 피해 또는 빈곤한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거리로 나온 아동·청소년들의 성(性)을 몇 만원에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익명채팅앱과 SNS익명대화창에 차고도 넘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어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아' 협박한다. 도움과 공감의 필요한 삶의 끝자락 아이들이 교화라는 명목의 처벌이 두려워 숨어야 하는 현실이 지독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초, 성명을 통해 성매매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당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숙하는 과정인 만큼 아동·청소년

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발성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0월 초,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면서 법적 조력이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및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나아가 성착취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2015년 8월 7일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 발의)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모든 아동은 성인이 되어가는 성장기에 사회와 국가로부터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2선택의정서에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부여한 아동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이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래 지금까지 모든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입법 반대 의견을 이유로 1년 9개월이 되도록 심의 상정조차 회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권법센터는 비영리 법률사무소로,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소송과 자문·상담, 입법운동, 연구,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계성 지적장애 상태의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속히 법안을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 10. 7.

장애인권 법法센터
Disability Right Advocate Center



성명서

‘대상아동·청소년’ 삭제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법안의 국회 즉각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성착취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까지 당하게 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약화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이다.

아청법의 목적 조항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 마련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은 위 구제 및 지원절차에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까지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는커녕 낙인으로 더 움추려들고 좌절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도 성매매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교육의 대상이 된다거나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하거나,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1) 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선량한 성 풍속 침해뿐만 아니라,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 고 하고 있다.

역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우리는 이 역사의 거대 물줄기 안에 있다.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각성하여 ‘아청법’ 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 법안 국회통과를 조속히 실행하라.

2019. 10. 8.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단장 서순성 변호사

법률지원단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9-10-아동위-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제 목 : [성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전송일자 : 2019. 10. 10.(목)

전송매수 : 총 2매

[성 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¹⁾」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명백히 성착취 피해자인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폐쇄된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보호처분 규정도 두고 있다(제40조). 이와 같은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피해 신고를 포기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상은 스마트폰 익명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이용되면서 더욱 만연하고 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서 “범죄”인 “성착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자발적 성착취”라는 모순적인 잣대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운용 근거가 위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부여한 국가의 아동보호의무에도 명백히 반한다. 지난 2019. 10.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

1)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폐지는 필연적이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인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2016년에 발의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중 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은 성착취 피해자가 거듭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적 보호처분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성명서

담당자	[redacted] 변호사			
작성일	2019. 10. 11. (금)	작성처	땡동(02-924-1224)	총 2장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조속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고,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한결같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와 ‘피해가 아닌 것’의 구도로 아동을 평가하고 차별 취급하는 현행법은, 어떤 아동에 대해서는 성착취의 피해자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인식은 성착취가 어떤 사회구조에서 발생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자발성’을 논할 수 없음을 간과하는 것이자, 더 나아가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포기하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유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이하 ‘제2선택의정서’)는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된 모든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명시하고(제2조),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9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제2선택의정서를 이미 2004년에 비준하였다. 그로부터 15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익명 채팅앱 등을 통해 15년 전보다 더 심각한 성착취 위협 한가운데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특히 탈가정·탈학교한 여성 청소년, 장애,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는 반면, 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피해자성을 입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상아동·청소년’을 유지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이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가해자

에게 유용한 협박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아동들은 신고 등을 통해 공적 체제 안에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땡동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상담하고 위기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동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취급하려는 모든 법제도의 태도, 사회인식에 맞서 변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땡동은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의무의 이행으로서, 그리고 특히 존엄과 평등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2019. 10. 3. 발표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입법하라. (끝)

2019. 10. 11.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땡동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성명] ‘성매수 대상 청소년’이 아닌 ‘성범죄 피해 청소년’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6년 UN은 ECPAT, UNICEF, 아동인권을 위한 NGO 단체들과 스웨덴 정부의 협력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위한 UN세계대회를 개최한 후 2000년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후에도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더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민간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결의하였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EU 등 지역 단위에서도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2007, 란사로테 협약),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EU 조정지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착취와 학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들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인터넷이 범죄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성범죄자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기도 한다. 미국 뉴욕주 법무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EA등 게임 회사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루이지애나주는 성범죄자의 SNS에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효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내용, 관할 법원, 주소, 신체 특징 등을 SNS에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10년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리노이주는 2009년부터 성범죄자의 SNS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 매치닷컴(match.com), 이하모니닷컴(eHarmony.com), 스파크 네트워크(Spark Network)등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도 성범죄 척결에 나섰다. 세 업체 대표들은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공동 성명을 내고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의 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매매 및 성적 착취 문제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제로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동의 복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장수사를 통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루밍 단계에서 범죄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검거한다.

이런 노력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법은 여전히 아동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청법’조차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 아청법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서 제외되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성매매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지만 청소년이기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 사회 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의 특성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습성을 몰이해한 것이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은 이미 성공 경험이 많은 성범죄자들의 수법에 속기 쉽다. 어리다는 것 자체가 취약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위력이 존재한다. 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들은 ‘그루밍’이라는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아동을 주변사람들과 고립시키고 통제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한다. 그루밍에 의한 범죄는 외형적으로 아동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촬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하다. 아동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기도 한다. 때로는 아동기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호기심도 그루밍에 이용된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단순히 아동이 비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서 제외하여 아동이 스스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아청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청법뿐만 아니라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령이 만13세 미만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끝)



※ ‘ECPAT International’은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로 97개국 111개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은 탁틴내일이 ECPAT 한국지부로 국제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담 당 자	■■■■ (공익법센터 어필 / 상근 변호사)			
작 성 일	2019. 10. 15. (화)	작 성 처	어필 (02-3478-0529)	총 2장

제목: 성착취 인신매매에 이용된 아동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무부는 해당 아동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보호대책안’을 마련하라.

현행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 조사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성매수자 또는 알선자로부터 협박 및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본인들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착취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신고한 본인들이 소년보호시설에 위탁감호가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들이 사법적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체계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약한 지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대상아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보호처분이 부과는 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해당 청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인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배경인데, 이들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 혹은 가족관계 파탄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이탈한 경우가 많다. 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고 정의되고 있으나, 성매매에 유입된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매수에 참여하였다고 형식적으로 의제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라 불리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한국은 2015.5.9.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2015.12.이후 발효)’에는 ‘착취’의 목적을 위해서 협박이나 폭력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인신매매’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신매매 성립 자체는 영향이 없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착취의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만 있으면 협박이나 사기 등의 위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는 성립한다.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의 취약성 및 성매매에 유입을 선택하게 된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성을 이용 및 착취하고자 하는 성매수자의 뚜렷한 목적성이 인정되며, 대부분 이들을 몰래 만나 이동하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이 동반되므로, 이는 명백한 ‘성착취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위 의정서상 취지에도 반하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제1조)에도 결과적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배경을 문제삼아 2015년 8월 7일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 및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것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¹⁾는 취지)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옹호와 관련한 소송과 상담, 입법운동 및 교육, 국제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된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이용된 피해자’이므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팔레르모 의정서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아청법의 일부개정안에 따라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곧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아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며, 어떤 경위로든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실제적인 방안이다. 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끝)

2019. 10. 15.

공익법센터 어필

1)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1434&call_from=rsslink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언론보도 해명 게시판_ 2019.6.7. 법무부 답변글 중 (글제목: “아청법 개정안 취지 공감...여성가족부에 대안제시”)

한국젠더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Gender and Law

성명서 2019. 10. 16.(수)	담당자	■■■■ 변호사(학술간사, ■■■■)
	문의	한국젠더법학회 genderlawkr@hanmail.net / http://www.genderlaw.or.kr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 마련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피해 아동·청소년과 구별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아동·청소년은 자신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어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및 지원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청법상 ‘대상 아동 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에 대해 2018년 CEDAW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성매매 착취 피해 여아를 비롯한 아동들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및 교화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피해자 중심, 인권 중심의 접근법을 선택하여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2019. 10.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법률적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아청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6.

한국젠더법학회
회 장 최 은 순

성명서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의 구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정보보호법’)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의 경우, ‘처벌’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의 당사자가 된 아동을 자발성 및 동의를 근거로 피해자가 아닌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우리나라가 비준·발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성매매의 당사자가 된 아동 역시 성적 착취의 피해자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하에서 이루어진 동의(informed consent)가 불가능하거나,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for which the child is not developmentally prepared)에 대한 성적 행위 일체를 “성적 학대”로,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대가가 제공되는 경우를 “성적 착취”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성인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CRC/C/KOR/CO/5-6, paras. 28-29). 그런데 법무부는 현행 청소년정보보호법의 이분법을 유지하여야 하는 근거로서 ① 모든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 착취의 피해자는 아니며, ② 성매매로의 재진입 방지 및 ‘교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은 폐지하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정보보호법 제38조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역시 성인의 성매매와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아동의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면서, 성매매에 대하여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아동의 ‘성매매’는 성인의 성매매와 결코 동일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인과 같이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적 관계, 성인과 아동 사이의 권력관 CRC/C/KOR/CO/5-6, paras. 28-29계를 도외시한 채 아동을 “자발적,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동”으로 규정짓고 보호처분의 낙인을 찍는 일이 타당한가?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처벌이 아닌 교화라고 하지만, 보호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처벌이다. 피해자이자 아동

인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보호를 받는 일이다. 보호처분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은 적절한 교화도, 보호도 될 수 없다. 보호처분의 대상이 됨을 구실로 오히려 협박을 가하고 또 다른 학대와 착취를 하는 수많은 성매수자들의 태도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매매 형태의 성적 학대와 성적 착취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처벌이 아니”라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모든 아동이 성적 학대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 또 동지(同旨)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경청하라. 그 누구보다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또 다른 성적 학대와 착취의 피해를 온전히 감내하여야 하는 아동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포함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and Law Ewha Womans University

성명서 2019. 10. 18.(금)	담당자	■■■■ 교수
	문의	egenderlaw@ewha.ac.kr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서의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아청법은 제2조제7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피해 아동·청소년’과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 아동·청소년에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아동·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로서 이들은 본인들이 성매수자 또는 알선자로부터 협박 및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현행법상 본인들에게 보호처분이 부과되어 소년보호시설에 위탁감호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본 법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성착취 내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이 사법적 보호 및 지원서비스 시스템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내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이들은 성매수범죄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팔레르모 의정서’도 ‘착취’의 목적을 위해서 협박이나 폭력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인신매매’라 정의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신매매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협박이나 사기 등의 위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이 인정되어도 인신매매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의 제8차 보고서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매매 착취 피해 여아를 비롯한 아동들을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 및 교화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피해자 중심, 인권 중심의 접근법을 선택하여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러므로 아청법에 규정된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내지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용된 피해자’임이 분명하므로, 국회는 아청법 상의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자는 발의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며 성착취 내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므로 다시 한 번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19. 10. 18.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Eunice K. Kim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표: [REDACTED])

전화 : 062 351 0518 팩스 : 062 443-2015

email : companion.lfpi@gmail.com

국회는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상은 스마트폰 익명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이용되면서 더욱 만연하고 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신고를 하면 강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호처분'이라는 사실상 형사처분을 받는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제2조 제7호) 명백히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폐쇄된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보호처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제40조).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에게 사실상 형사처분과 다르지 않기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피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취약한 지위가 더욱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매매 관련 논쟁과 정책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양산되는 성구매자들의 문제는 덮어 둔 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여성이자 아동·청소년인 성착취 피해자로부터 찾았고 그 사회적 비난 또한 그들에게 가했다. 이는 옳지 않다. 어떤 유형의 성매매이든 성적인 면, 권력적인 면, 경제적인 면 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구매자들은 성별적으로 연령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면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성을 착취한다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인 여성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었는지(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유입된 이후 성착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지'이다. 성구매자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통제력(사회지위, 경제력, 물리력)을 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든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는 지경에 처하기 때문이다.

바로 위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신매매방지협약 의정서」 제3조에서는 고의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5)는 성매매에서 '수요(성구매남)'라는 측면을 곧바로 착취와 관련해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가입국은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차단하도록 양국 간 및 다자간 협력을 포함하여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조치 등 입법적 수단과 기타 대책들을 채택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에서는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된 모든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명시하고, 제9조에서 국가에게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지난 2019. 10.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보호 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본연의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폐지는 필연적이다.

국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끝>

2019년 10월 21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성명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성착취피해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아동·청소년법은 성매매 형태의 아동 착취에 이용된 아동을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2조 6항과 7항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있다. 법률상 ‘대상아동’이라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사 및 해바라기 센터 등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년시설 위탁감호,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처벌을 받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는다”라는 성매수 범죄자 협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 형태의 아동착취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현행 아동·청소년법은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나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합의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찾아내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며 후자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의에 의해서도 아동의 합의나 자발성이 아동의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최종 견해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법적 조력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성인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 및 성적착취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CRC/C/KOR/CO/5-6, paras. 28-29).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2015년 8월이다. 성인의 위력과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성착취 피해 아동임에도 피해 아동으로 명명 받지 못한 채 착취에 반복 노출되는 아동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정부와 국회는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청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9년 10월 22일

세이브더칠드런

한국YMCA전국연맹		제공일시	2019. 10. 23.	
		제공부서		
	보도자료	담당자		☎ 02)2677-9220
		📎 사진 : (없음) 📎 분량 : 총 2 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함과 함께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34조) 우리나라는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을 잣대로 들이대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구분 짓고 범죄자화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법 집행과 해석에 대해 개탄하며 현행 법 체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착취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처벌로서 아동·청소년을 규제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성 착취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허용적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집행과 정책이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년째 아무런 진척 없이 계류 중에 있다.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언제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실을 외면 할 것인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				

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관의 주도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수많은 민간 현장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역의 청소년 및 시설,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며, 국회가 본 법안을 통과 시킬 때까지 끊임없는 요구를 지속할 것이다.

- 법무부는 성착취 아동·청소년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법률 개정을 위한 적극적 입장을 밝혀라!!
- 국회 법사위는 하루속히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을 통과하라!

2019년 10월 23일

한국YMCA전국연맹

성명서

담당자	■■■■■	연락처	02-2633-1318, 02-6052-1318	
작성일	2019. 10. 24. (목)	작성처	십대여성인권센터	총 4장

대한민국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당사국의 책무를 이행하라.

2019년 9월 18일과 19일에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2019년 10월 3일에 발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뿐 아니라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를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여 지는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범죄자로 취급되는 점, 이로 인해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포기하게 되어 성구매남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2차 피해 대상이 되는 점,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문제의식이 없고 보호관찰을 포함한 허용적인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의 우려 사항을 명시하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려한 것과 같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강요로 인해 성착취의 대상이 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더 이상 성착취로 피해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발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1)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2)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할 것.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법률상 명시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 4) 지원 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 5)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할 것. 5)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6)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심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말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다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요?” 라고 위원회는 질문하였다. 정부는 최종건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많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여성·아동단체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의 보호는커녕 이를 악용하여 피해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끝)

아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이행사항 점검 심의 후 대한민국 정부에게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했던 권고문의 일부입니다. 아래의 첨부문서는 번역본 초안임으로 인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교사에 의한 성희롱뿐 아니라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를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 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할 것;

(d) 다음과 같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대상아동)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i)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할 것. (ii)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 (iii)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 (iv)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인신매매, 불법거래, 탈취

45. 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통과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SDG 목표 8.7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요건을 삭제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조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국외 추방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따라 이전 권고들(CRC/C/OPSC/KOR/CO/1)을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은 「여권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할 것;

2019. 10. 24.

